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362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화장품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2

I. 개요

1.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36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10.

(3) 회 부 일 : 2024. 1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화장품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화장품의 날(매년 9월 7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¹⁾,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의의가 큰 날 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등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i)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ii)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iii)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v)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등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이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려고 하는 9월 7일은 「화장품법」이 제정(1999.9.7.)된 날인데, 개정안은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화장품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등 고려하여 기념일 법정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기념일 등)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 참고로, 개별법을 통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는 식품안전의 날, 마약퇴치의 날, 약의 날²⁾ 등이 있음.

□ 한편, 화장품의 날 기념 연혁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민간 주도로 매년 3월경에 기념행사를 진행하였고, 2013년에는 식약처와 관련 단체가 공동 주관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식약처와 관련 단체에서 기념식을 공동 개최하였음.

< 화장품의 날 기념 연혁 >

- (배경) 「화장품법」 제정·공포일('99. 9. 7)을 기념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종사자와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
- (주요경과)
 - 2004년~2007년 기간 중 (사)대한화장품협회 주도로 매년 3월 3일을 ‘화장품의 날’로 행사 개최
 -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공동 주관으로 2013년에 기념행사를 개최
 - 2024년 2월 20일 (사)대한화장품협회 총회에서 ‘화장품의 날’을 화장품법 제정 · 공포일('99.9.7)인 매년 9.7일로 지정
- (화장품의 날 행사 연혁)
 - 1999. 09. 07. 「화장품법」 제정 · 공포
 - 2004. 03. 03. 화장품의 날 기념 행사
 - 2005. 03. 24. ~ 03. 27. 화장품의 날 기념 행사
 - 2006. 03. 02. ~ 03. 07. 화장품의 날 기념 행사
 - 2007. 03. 06. 화장품의 날 기념 행사 민간 주도
 - 2013. 03. 08. 화장품의 날 기념 행사(식약처 · 대한화장품협회 공동 주관)
 - 2024. 10. 17. 화장품의 날 기념 행사(식약처 · 대한화장품협회 공동 주관)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 ※ 식품안전의 날(5.14.) : 2016년 식품안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기념일 지정
 ※ 마약퇴치의 날(6.26.) :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3제1항)에 의거 기념일 지정
 ※ 약의 날(11.18.) : 2021년 약사법(제2조의2)에 의거 기념일 지정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품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향상을 기하기 위해 화장품의 날을 지정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의 날 행사를 통해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 종사자와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장품 산업의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화장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4